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19.4.30. 및 6.25.)

1 징계기준

❖ 갑질 및 갑질·성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구분	심한비위, 고의	심한비위, 중과실/약한비위, 고의	심한비위, 경과실/약한비위, 중과실	약한비위, 경과실
갑질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갑질·성비위 은폐 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징계감경

❖ 갑질 및 갑질·성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된 자의 경우
☞ 정부포상(훈·포장, 표창, 모범공무원)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징계 감경 제외 사유〉

-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 금품, 향응 등 수수
 - (예산, 기금, 보조금, 국유재산 등)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
-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 음주운전,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관련 의무 위반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갑질 및 갑질·성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9.4.30. 신설)
-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19.6.25. 신설)

⇒ 1번, 2번 항목 '19.4.30. 부터 적용

3 적극행정 면책 강화

고도의 정책사항 실무직 면책 고도의 정책사항은 실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 제외

적극행정 면책요건 확대 (현행) 국가이익·국민생활편익·피해방지 + (추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 완화 (현행) 사적 이해관계 無 + 절차상 검토사항 + 법령상 행정절차 + 필요한 보고절차 → (개정) 사적 이해관계 無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無

4 음주운전 징계 강화

❖ 현행 징계 기준보다 1단계씩 상향 조정

구분	현행	개정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 미만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감봉 - 견책	정직 - 감봉
	0.1% 이상	0.08% 이상
	정직 - 감봉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3회 음주운전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5 징계부가금 제도 개선

❖ (현행) 징계부가금은 금품등 수수가액의 1~5배, 「청탁금지법」의 과태료는 2~5배(제재 불균형)
→ (개정)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사항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부가금 2배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3번, 4번, 5번 항목 '19.6.25. 부터 적용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 **상급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 상급자의 '법령을 위반토록 한 지시'는 **갑질에도 해당**



청탁금지법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A의 부정청탁에 따라 평정순위 변경을 지시한 B

형사처벌 *

평정담당 공무원 C의 지휘, 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A)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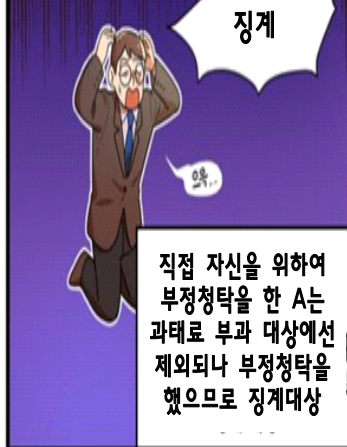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징계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A는 과태로 부과 대상에선 제외되나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징계대상



사례로 보는 「공무원 행동강령」

☞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 사례**



A시청 녹지과장 나푸른씨는 직무관련 조경업체에 부탁해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조경기계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구입할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나푸른씨는, 그 후 이 사실이 알려져 징계를 받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속 청렴 이야기

섬세한 일처리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윤필상」 선생의 일화



윤필상 선생은 세종 때 급제하여 세조 때 이르러 본격적인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형방승지로 재직할 때 빈틈없는 일처리를 하는 것이 세조의 눈에 띄어 세조의 총애와 신임을 얻고



그 후 문신으로서 전장에서도 능력을 입증해, 섬세한 일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에 승진은 거듭하여 마침내 성종 9년 11월에 우의정에 올랐고, 좌의정을 거쳐 성종 16년에 영의정까지 올랐다.



윤필상 선생은 백성을 위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친서민 정책으로 사랑받은 청렴한 재상이었다.

청렴 명언

善爲牧者(선위목자) 必慈(필자)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欲慈者(욕자자) 必廉(필염)

자애로우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欲廉者(욕염자) 必約(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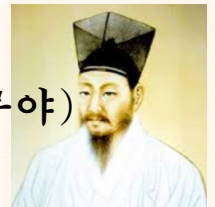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節用者(절용자)

牧之首務也(목지수무야)

절용이란 곧

목민관의 으뜸되는 임무이다.



<출처: 목민심서 「율기6조 節用(절용)편」>

「감사관이 찾아가는 청렴교육」안내

교육내용 갑질 근절, 적극행정 실천, 음주운전·성범죄 등 최근 강화된 법령 정보 등

교육대상 지방관서·노동위원회 과장 이상 관리자

권역 (지도위 포함)	일시	장소
강원지청 권역 (강원지도위)	9. 3.(화) 15:00~17:00	원주지청 3층 대회의실
경기지청 권역 (경기지도위)	9. 6.(금) 15:00~17:00	경기지청 2층 대회의실
충부청 권역 (인천지도위)	9.10.(화) 15:00~17:00	충부청 4층 대회의실
광주청 권역 (전남·전북지도위)	9.17.(화) 15:00~17:00	광주청 3층 대회의실
대구청 권역 (경북지도위)	9.20.(금) 15:00~17:00	대구청 5층 대회의실
부산청 권역 (부산·경남·울산지도위)	9.24.(화) 15:00~17:00	부산고용센터 5층 대회의실
서울청 권역 (서울지도위)	9.27.(금) 15:00~17:00	서울청 5층 컨벤션룸
대전청 권역 (충북·충남지도위)	10.1.(화) 15:00~17:00	대전청 5층 대회의실

청렴 퀴즈 이벤트

OX 다음 설명하는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를 선택해 주세요.

Q. '갑질 행위'로 징계의결 요구된 자가 '정부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다.

① ○ ② ×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소속 및 성명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2019. 8. 30.까지**

♣ 응모방법: **exblue@korea.kr**

지난호(제6호) 정답은 **②번 ×**이었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을 보내드렸습니다.^^

축! 당첨 박○○(중부청), 어○○(서울관악), 조○○(창원지청),
최○○(보령지청), 권○○(고객상담센터) 등 5명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월별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에 대해
포상금 각 10만원 지급

2019. 7월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대구	고용관리과	주무관	이민경
울산	고용관리과	사무관	김일섭
부산	취업지원과	상담원	노혜윤
부산	취업지원과	상담원	김세화
보령	지역협력과	주무관	김승주

2019. 8월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보령	보령고용센터	주무관	최여진
익산	지역협력과	주무관	이진희
보령	지역협력과	주무관	최유원
원주	원주고용센터	주무관	윤원병
충주	충주고용센터	보안요원	이슬기

「추석 명절 선물」 수수 가능 여부 자가진단

선물을 받으신 분이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인가요?

NO
아니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YES

아래 사유에 해당하나요?

<예시>

- 친족이 보낸 경우
- 상급자 → 하급자
- 동창회·친목회등 기준에따른 제공
-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 등
-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NO
아니요

공직자가 선물을 보내신 분과
직무 관련이 있나요?

<예시>

-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 각종 간담회, 회의 등 제공
- 산하기관 → 감독기관
- 하급자 → 상급자

NO
아니요

5만원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YES

5만원 넘는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YES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악재의
목적이 인정되나요?

NO
아니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YES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 인·허가, 지도·단속 등 담당 공직자
- 입찰, 감리 등 담당 공직자
- 인사·평가, 감사 등 담당 공직자
- 고소·고발, 심판·조사 등 담당 공직자



농수산(가공품)물
10만원 이하 가능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